

慶北大學校圖書館 長期發展計劃에 관한 研究 *

〈慶北大 圖書館學科 教授〉 孫 正 彪

目 次

I. 序 言	3. 施設
II. 大學圖書館計劃을 위한 理論的 背景	IV. 慶北大學校圖書館 發展計劃案 (1988~2002)
1. 藏書規模와 豫算範圍	1. 計劃樹立을 위한 奉仕對象者 規模
2. 職員規模와 組織構造	2. 藏書構成計劃
3. 施設規模	3. 職員 및 組織計劃
III. 慶北大學校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	4. 施設計劃
1. 藏書	V. 結 論
2. 組織 및 職員	

I. 序 言

오늘날의 大學教育의 目的是 高度의 知的文化의 繼承과 傳達, 創造와
發展 및 國家社會의 指導者 養成이라는 傳統의 目的 이외에 現實社會
의 當面問題 解決에 直接적으로 도움이 되는 研究와 그 研究를 通한 現
實參與라는 新로운 目的指向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¹⁾ 이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機能과 使命도 더욱 多樣化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의 實現

1)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 内容에 관한 綜合的 研究—大學教育 質的
向上에 關한 研究(서울: 同研究所, 1967), PP.13~16.

* 이 논문은 1989년 8월에 경북대학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化를 위하여 대학은 마침내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現實에 直面하기에 이르렀다.²⁾

이처럼 大學教育構造가 時代의in 方向轉換現象을 자아냄에 따라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도 비록 美國·日本 등 先進國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理念具現과 效率的인 目的遂行을 위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藏書 및 人的 開發은 물론 49개 統合大學 中 37個 大學³⁾ 이 圖書館을 신축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慶北大學校圖書館의 現況을 보면 他大學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奉仕構造 再體制化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長足의 발전을 가져왔다 고는 하지만 大學教育의 內實化를 도모하기에는 아직도 施設·資料·人的構成面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研究는 大學education의 內實化 圖謀를 위한 價值指標設定에 다소나마 기여하여 보고자 한 의도에서 圖書館의 三大要素인 資料, 職員, 施設을 중심으로 國內外 綜合大學들의 實態와 比較하여 그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고,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에 걸친 發展計劃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大學圖書館計劃을 위한 理論的 背景

I. 藏書規模와 豫算範圍

1) 藏書規模

대학교육의 內實化를 위한 가장 重要한 要素라면 무엇보다도 藏書開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서개발은 碩·博士課程의 有無와 奉仕對象者規模, 教科課程의 範圍, 研究所數와 研究活動, 教授方法 등에 따라

2) P.F. Drucker, 斷絕의 時代, 韓國能率協會 譯編(서울:韓國能率協會, 1971), pp.455~459.

3) 全國私立大學校 圖書館協議會, 全國私立大學校圖書館協議會現況 및 디렉토리, 1988.3(仁川:同協議會, 1988), pp.4~90; 崔貞泰, “釜山大學校 圖書館 新築을 위한 基本計劃研究”, 國立大學圖書館報, 6輯(1988), p.100.

그 開發範圍와 規模가 달라진다 하겠다.⁴⁾

그러한 觀點에서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1988.8.27 대통령령 제12497호로 개정공포) 제12조 3호에 명시된 4年制 大學圖書館의 基本藏書量과 年次增加量 및 同 제14호에 명시된 定期刊行物에 대한 量的 基準을 먼저 살펴 보면, 藏書量의 경우는 「총학생 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 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를,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學部中心의 教育目的遂行에 基本的으로 갖추어야 할 法的 最低基準의 下限線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碩·博士課程과 여러개의 研究所를 設置하고 있는 綜合大學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藏書規模와 藏書開發範圍의 擴張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면 綜合大學의 경우 大學教育의 內實化를 도모하기 위한 藏書開發範圍와 藏書規模는 최소한 어느 정도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단顿(P.J.Danton)이 제시한 藏書開發範圍 5段階, 즉 ① 最低集書段階, ② 碩·博士課程 教授·學習支援集書段階, ③ 強度높은 研究用 集書段階, ④ 網羅的 集書段階, ⑤ 完全集書段階에 대한 理論⁵⁾을

4) 藏書規模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에 대한 學者들의 見解를 綜合하여 보면 대체로 上記한 다섯가지가 基本要素로 나타나고 있다.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 Wilson, 1974), pp.170-175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Committee, “大學圖書館을 為한 基準,” 李炳穆 譯, 도협월보, 제18권, 5호 (1977. 6), p.4 ; M.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 Unesco, 1968), pp.64-65 ; V.W.Clapp and R.T.Jordan,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26, no. 5(sept, 1965), p.373.

5) P.J.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s :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3), pp.112~115.

기초로 8個國 19個 基準을 比較分析하여 본 결과, 筆者가 한 論文에서 밝힌 바와 같이 碩·博士課程이 거의 設置되어 있지 않고 學部 中心敎育을 지향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學生 1人當 基本藏書量 20~30卷 程度, 年次增加量 1.4~2卷 程度로서도 어느 정도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의 學科에 碩·博士課程이 開設되어 있는 綜合大學의 경우는 大學敎育의 內實化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學生 1人當 基本藏書量 70~80卷, 年次增加量 1人當 3卷 以上을, 碩士課程 學生數와 研究所數가 많은 대학의 경우는 上記한 2段階目標에 도달한 연후에는 學生 1人當 藏書量 100卷, 年次增加量 1人當 4~5卷 以上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⁶⁾

그리고 定期刊行物의 量的基準은 外國의 10個 基準을 比較分析하여 본 결과 대체로 2,000~3,000 餘種이 最低基準으로 나타나고 있으나⁷⁾, 綜合大學의 경우는 英國이 0.75種⁸⁾, 캐나다가 0.56~1種⁹⁾, 獨逸이 0.96種¹⁰⁾을 基準으로 제시하고 있고, 美國은 1984年 現在 50個校 實態分析結果 1.84種¹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先進國의 水準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綜合大學 敎育의 內實化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最低基準을 李炳穆氏의 권장기준처럼 學生 10名當 2種 以上¹²⁾이나, 혹은

-
- 6) 孫正彪, “國立大學校 圖書館關係基準 模型에 관한 考察,” 문현정보학보, 제 2 집(1986), pp.24~25 참조.
 - 7) 孫正彪, “綜合大學圖書館 運營의 效率化 方案,” 大學敎育 제23호(1986, 9), p.48.
 - 8) K.W.Humphreys, “Standards in University Libraries,” Libri, vol. 20, no.1~2(1970), p.146.
 - 9) Flovence B. Murray, “Canadian Library standards,” Library Trebds, vol.21, no.2(Oct, 1972), p.307.
 - 10) Council for Arts and Science, Recomendations of the Council for Arts and Science, Part II, Learned and Scientific Libraries (Tubingen: Mohr, 1964) (李炳穆, 大學圖書館基準의 理論과 實際(서울: 九美貿易, 1985), p.124에서 再引用).
 - 11) ARL Statistics, 1983~84(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85), p.36을 분석한 것임.
 - 12) 李炳穆, op cit., p.131.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의 文教部建議案과 1988年 2月에 文教部의 改正審議를 거친 바 있는 圖書館法施行令 改正令案 第 3條 別表 1(이는 大學設置基準令 改正時 고려키로 함)에 明示된 案처럼 人文系 學科當 30種以上, 社會 및 自然系 50種以上, 家政 및 藝體能系 20種以上, 醫學系 200種以上¹³⁾으로 하고, 上記한 基準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2段階 目標로 大學院 教授·學習支援 및 研究活動支援을 위한 集書水準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學生 1人當 0.5種以上¹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資料購入 豫算範圍

大學圖書館이 多樣한 情報資料를 媒體로 하여 教授와 學習, 調查와 研究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 주는 橋梁的 役割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上記한 藏書構成水準과 더불어 그 水準到達에 충분한 豫算的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함은 周知의 事實일 것이다. 그러나 國立大學圖書館의 경우 每年初에 시달되는 國庫에 대한 歲出豫算各目明細書와 國立大學(校)期成會運營管理指針에 근거하여 策定된 豫算을 보면, 1987年末 現在 11個 國立綜合大學의 1個校當 平均 大學總豫算額에 대한 資料購入費의 構成比가 1.69%(本校는 1.3%)¹⁵⁾밖에 되지 않아 受贈圖書까지 포함한 學生 1人當 年次增加量이 1.74卷(本校는 1.88卷), 受贈分까지를 포함한 定期刊行物이 1人當 0.13種(本校는 0.11種)의 水準¹⁶⁾에 머물고 있어 豫算 策定基準에 많은 問題點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 基準을 어느 정도로 策定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이에 대하여 學生 1人當 年次增加量 現況과 法的基準, 學校總豫算額에 대한 圖書購入費 現況, 앞서 제시한 定期刊行物基準 學生 10名當 2

13)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國立大學圖書館運營改善方案, 1984, 6.1(未定稿版), p.3; 圖書館法施行令改定令案(文教部), 1988.2(未定稿版), p.26.

14) 孫正彪, “綜合大學圖書館運營의 效率化方案,” p.48.

15) 國立大學圖書館報, 6輯, p.88.

16) Ibid, p.89에 수록된 年間受入資料統計를 分析한 것임.

種, 圖書 및 定期刊行物의 平均定價 등을 기초로 하여 살펴 보면, 筆者가 한 論文에서 그 算出根據와 더불어豫算基準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과에 碩·博士課程이 開設되어 있는 大學의 경우에는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도모하려면 적어도 資料購入費를 學校總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 除外)의 4%以上을 策定하도록 하고, 더불어 博士課程學生數와 研究所數가 많은 大學의 경우에는前述한 2段階 藏書構成目標에 도달한 연후에는 學生 1人當 年次增加量 4~5卷, 定期刊行物 1人當 0.5種의 水準이 될 수 있도록 資料購入費를 學校總經常費의 5~6%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¹⁷⁾, 基本藏書量이 法의 基準에 未達한 大學의 경우에는 基本藏書量 具備期間 동안에는 年 6%¹⁸⁾를 策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職員規模와 組織構造

1) 職員規模

組織의 效率的인 運營과 圖書館의 質的 奉仕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앞節에서 언급한 藏書開發과 더불어 다양한 情報資料를 媒體로 하여 教授와 學習, 調査와 研究間に 相互有機의인 關係를 맺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適正規模의 職員과 有能한 司書의 確保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그러나 1988년 8월 16일 圖書館法施行令이 改正公布되기 전까지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旧法施行令에 명시된 職員基準을 보면 낮게 策定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司書職員配置基準만을 제시해 놓아 사실상 대학교육의 內實化를 도모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基準이었다 하겠다.

이에 비하여 1988年 8月 16日부터 시행된 改正圖書館施行令 第 4條에 명시된 基準을 보면,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7) 孫正彪, “綜合大學圖書館運營의 效率化方案,” pp. 48~50.

18) 손정표, “대학도서관 기본장서구성기준에 관한 연구,” 미간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1972), p. 141.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고 하여 學生數만이 아니라 바우몰(W.J.Baumol)과 마르쿠스(M.Marcus)가 한 論文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學生數와 더불어 職員規模에 가장 높은 統計的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藏書規模¹⁹⁾까지 基準 設定要素로 채택하고, 大學圖書館 機能의 活性化를 어느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 基準을 上向調整한 點은 꽤 意義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基準도 역시 司書職員配置基準만을 제시하고 있어 旧法施行令에서 안고 있던 問題點을 완전히 解決해 놓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內實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圖書館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려면 改正圖書館法施行令에 明示된 基準 以上의 司書職員數를 확보하되, 圖書館業務란 專門職業務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非專門職業務도 전체의 34~40%²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法的으로는 明文化되어 있지 않으나 正司書(1·2級) : 準司書 : 司書資格證非所持者의 構成比率이 40% : 25% : 35%²¹⁾인 점을 감안하여 法定司書職員의 0.54倍 범위 내에서 非司書職員도 더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組織構造

經營管理에 있어서 組織의 良否는 그 企業의 성패에 대한 관건이 될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組織은 業務種類와 職員規模,

19) William J.Baumol and M.Marcus, Economics of Academic Libraries (Washington, D.C. :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1973), pp.28~29.

20) 非專門職業務의 構成比率을 보면 美國圖書館協會가 40%, 英國圖書館協會가 35%, 日本圖書館協會가 34%를 제시하고 있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Descriptive List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chicago : ALA, 1948). Library Association,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2nd ed. (London : LA, 1974); 日本圖書館協會, 大學圖書館の業務分析 (東京 : 同協會, 1968)).

21) 孫正彪, “國立大學校圖書館關係 基準模型에 관한 考察,” p.15.

職務內容의 複雜程度와 責任程度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며, 그러한組織規模는 곧 統率範圍에 의해 결정된다.

圖書館組織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바, 이에 적합한 統率範圍를 살펴 보면, 이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와 專門職業務 對 非專門職業務의 構成比率로부터 推定하여 본 결과 筆者가 한 論文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收書業務 4~5名 程度, 整理業務 5~6名 程度, 參考·書誌業務 3~4名 程度, 庶務·管理業務 4~5名 程度(단 건물관리부문은 15~30名), 弘報業務 3~4名 程度²²⁾가 適正人員으로써, 대체로 1課가 3~4係, 18~24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理論을 基礎로 하여 우리나라 國立綜合大學圖書館의 組織構造現況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4課 1室, 기타 國立大가 3課로, 1988年 3月現在의 職員規模(서울대·중앙도서관 168名,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9개대 평균 55명)²³⁾로 볼 때는 서울대가 1課 程度의 增設이 요구되나 기타 國立大는 별문제가 없는 組織構造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大學設置基準令 第12條 3號에 명시된 學生定員 1人當 30卷, 年次增加量 1人當 3卷이나 <II-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碩·博士課程이 開設된 綜合大學의 경우 基本藏書量의 適正基準인 學生 1人當 70~80卷, 年次增加量 1人當 3卷을 基準으로 하여 改正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와 앞 節에서 제시한 非司書職員數算出方式에 의해 산출하여 보면 이 보다 훨씬 많은 職員數가 要求되므로 이러한 點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組織構造의擴大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內實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圖書館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려면前述한 算出方式에 의해 산출하여 볼 때 學生數 10,000名의 경우, 學生 1人當 30卷의 경우는 42名의 職員規模를 갖추어야 하므로 2課 程度, 學生 1人當 70~80卷을 갖출 경우는 72~80名이 요구되므로 3~4課 程度, 學生數 15,000名의 경우 1人當 30卷의 경우는 62名

22) 孫正彪, “公共圖書館組織構造에 관한 理論的 考案,” 圖書館學論集, 第5輯(1978), pp.44~46.

23)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통계, 1988(서울:同協會, 1988), pp. 36~47에 수록된 통계를 분석한 것임.

을 갖추어야 하므로 3課 程度, 1人當 70~80卷의 경우는 108~119名이 요구되므로 5課 程度, 學生數 20,000名의 경우 1人當 30卷의 경우는 80名을 갖추어야 하므로 4課 程度, 1人當 70~80卷의 경우는 142~157名이 요구되므로 6課 程度, 學生數 25,000名의 경우 1人當 30卷의 경우는 100名을 갖추어야 하므로 5課 程度, 1人當 70~80卷의 경우는 177~182名이 요구되므로 8課 程度로 組織을 編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施設規模

1) 閱覽席數

閱覽席에 관한 基準은 職員을 위한 空間에 관한 基準, 圖書收藏에 관한 基準과 더불어 大學圖書館의 空間基準設定에 三大基本要素²⁴⁾) 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圖書館施設規模決定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閱覽席基準에 관하여 먼저 現行 大學設置基準令 第12條 1項 2號에 명시된 規定을 보면, 4年制大學圖書館은 「열람실에서는 총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도록 하여 20~33%²⁵⁾를 제시하고 있는 外國의 基準과 比較하여 볼 때 결코 낮지 않은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24) P. Havard-Williams, “大學校圖書館 建築을 위한 空間基準,” 李炳穆譯, 國會圖書館報, 第19卷, 5號(1982. 9.10), p.41.

25)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1983年版(東京: 同協會, 1983), p.51;

岩猿敏生, 大學圖書館(東京: 雄山閣, 1976), pp.269-270;

李炳穆, op. cit., p.273;

David R. Watkins,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Trends, vol. 21, no.2(Oct. 1972), p.197;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Committee, Cuide to Canadian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Report, 1961-1964, p.262(李炳穆, op. cit., p.140에서 재인용);

Godfrey Thompson, Planning and Design of Library Buildings, 2nd ed.(London: Architectural Press, 1977), p.177; Humphreys, op. cit., pp.320-323.

그러나 솜머(R.Sommer)와 피터슨(P.Peterson)이 美國大學生들의 讀書習慣을 調査한 結果를 보면 學習場所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學生들이 거주하는 곳²⁶⁾으로 밝혀졌음에도 上記와 같이 在籍學生數의 25%를 座席數로 추천하고 있는가 하면, “大學들은 登錄學生數의 1/3以下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50%에 보다 가까워질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²⁷⁾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려운 家庭學習環境을 고려하여 본다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따라서 學部學生의 경우는 李炳穆氏가 바람직한 基準으로 提示한 바처럼 登錄學生數의 25%²⁸⁾以上으로 하고, 大學院生(登錄學生數)과 教授要員(助教包含)은 上記한 各國의 基準에 비추어 볼 때 각각 30%以上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要素單位別 空間規模

圖書館의 内部空間構成은 利用者를 위한 空間, 資料收藏을 위한 空間, 職員을 위한 空間, 利用者·資料·職員을 除外한, 즉 圖書館의 目的以外의 使用空間(nonassignable space)의 네부분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圖書館空間에 관한 現行基準을 먼저 살펴 보면, 4年制 大學圖書館은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3項 別表2에 명시된 施設基準面積算出公式인 「순사용면적(N)=0.73×총학생정원(T)m²+80m², 공유면적(복도·계단·관리실·창고·기계실·전기실·변소 등 부대시설)=0.65×순사용면적(N)m²」에 근거하여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施設基準은 同基準令이 1988年 7月 27日 大統領令 第12497號로 改

26) Robert Sommer and Peggy Peterson, "Study Carrels Re-Examined,"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26, no.4(July 1967), pp.263~265.

27) Ellsworth Mason, "Writing a Building Program," in Reader in the Library Building, edited by Hal B. Schell(Englewood : Micro-card Editions Books, 1975), p.115.

28) 李炳穆, op. cit., p.144.

29) Aaron Cohen and Elaine Cohen, Designing and space planning for Libraries (New York : Bowker, 1979), pp.62~66.

正公布되면서 新設된 것으로, 藏書 및 職員基準과 더불어 大學을 評價 할 수 있는 價值指標를 새로이 마련하였다는 點에서 그 意義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이란 그 成長이 항상 정지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랑가나단(S.R.Ranganathan)이 圖書館學의 第5原則에서 '圖書館은 成長하는 組織體'라고 主唱한 바처럼 비록 閱覽席數는 奉仕對象者 規模에 따라 限定性을 지니지만 이미 앞 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綜合大學의 職員規模의 경우는 계속적인 成長이 요구되기 때문에 施設規模도 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 밖에 情報의 大量傳達을 위한 컴퓨터의 導入, 個個 圖書館의 奉仕制度 등에 따라서도 影響을 받는다 하겠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空間基準은 現行基準처럼 學生數에 의해 全體面積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空間을 構成하는 要素單位別로 設定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實情을 감안하여 볼 때 要素單位別 空間基準을 어느 정도로 策定하는 것이合理的일 것인가. 이에 관하여 各要素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利用者空間基準－閱覽席 1座席當 面積은 外國의 基準들이나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보면 學部學生의 경우 $2.3m^2$ ³⁰⁾가 일반적인 見解라 하겠으나, 우리나라 大學生의 標準體位를 고려하여 볼 때, 日本이나 自由中國의 基準 및 로드워스나 李炳穆氏의 주장처럼 최소 $2m^2$ ³¹⁾로 하고, 大學院生 및 教授의 경우는 "2~3卷 以上의 圖書를 동시에 펴 놓고 作業을 하는 경우가 많아 學部學生보다 많은 空間을 필요로 하기"³²⁾ 때문에 피어스(W.S.Pierce)의 주장처럼 최소 $2.8m^2$ ³³⁾로 하는 것이 바람직

30) 李炳穆, op. cit., p.140; Humphreys, op. cit., pp.320~323; D. E. Beam, "Survey of Library Buildings and Facilities," in Reader in the Library Building, edited by Hal B. Schell (Englewood : Micro-cand Editions Books, 1975), p.90; Cohen, op. cit., p.84; Thompson, op. cit., p.103.

31)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p.51; 李炳穆, op. cit., p.145, 273; Havard-Williams, loc. cit.

32) Cohen, op. cit., p.25.

33) W.S. Pierce, Furnishing the Library Interior(New York : Dekker, 1980), p.24.

하다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자료 및 시청각자료용 책상의 1座席當面積은 메트카프(Keyes D. Metcalf)와 WICHE 基準이 3.72m^2 ³⁴⁾, 英國의 基準이 3m^2 ³⁵⁾를 제시하고 있으나, 機器를 놓고 筆記할 수 있는 空間이 요구되므로 우리나라 大學生의 標準體位를 고려할 때 3.5m^2 가, 컴퓨터 단말기용 책상 1座席當面積도 모니터와 키보드를 놓고 筆記할 수 있는 空間이 요구되므로 역시 3.5m^2 가 적합하지 않을까 여겨지며, 視聽覺室의 視聽만을 위한 1座席當面積은 標準體位를 고려하여 산출하여 본 결과,

(座面幅(여자의 앉은 엉덩이너비 평균) 32.73cm +곧바로 걸을 수 있는 최소통로 폭 50cm) × (座面깊이(남자의 엉덩이 끝에서 무릎 굽힌 뒤까지 길이 평균) 45.55cm +앞면 여유폭(몸을 옆으로 하여 걸을 수 있는 폭) 30cm) $\approx 0.63\text{m}^2$ ³⁶⁾

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 밖에 新聞(現刊)閱覽의 경우 메트카프는 讀者 1人當 3.72m^2 ³⁷⁾를 주장하고 있으나, 立席閱覽의 경우는 2m^2 가 적합할 것으로 料되며 開架資料室의 대출대 앞 利用者空間은 1일 평균 1,000책 정도의 대출·반납시는 20m^2 이 상이, 紛失防止裝置空間은 10m^2 이상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資料收藏空間基準－筆者가 調査하여 본 結果, 收藏量은 6段2連兩面書架 1個當 一般圖書는 平均 600冊 程度, 參考圖書 및 書誌資料는

34) Keges D.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New York : McGraw Hill, 1965), p.112 ; WICHE, Manual for Academic support Facilities p.61(랄프 이 엘즈워스, 大學圖書館建築計劃), 李炳穆譯(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2), p. 129에서 再引用)

35) Ibid., p.138.

36) 座面幅과 깊이에 대한 平均은 韓國標準研究所, 國民標準體位調查報告書, 1986年度(서울 : 工業振興廳, 1986), p.375와 p.407의 統計를 分析한 것임.

最小通路幅과 餘有幅은 文教部, 大學圖書館의 計劃) (서울 : 同部, 1988), p.21.

37) Metcalf, op. cit., p.107.

平均 400冊 程度(3단의 경우 200冊 정도), 古書는 대체로 수평보관이 요구되므로 290冊 정도), 定期刊行物 最新號 展示架의 경우는 6段2連片面展示架 1個當 30~36種 程度, 定期刊行物 製本分의 경우는 6段2連兩面書架 1個當 290冊 程度,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는 5段2連兩面書架 1個當 500個 程度 收藏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連兩面書架 1個當 所要面積은 開架制 閱覽室의 경우 「서가간 간격 1.8m×(서가길이 1.8m+통로 폭 1.2m=5.4m², 閉架制의 경우 1m²당 收藏量이 약 165冊³⁸⁾이므로 3.63m²(1.1坪) 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地圖函(낱장지도·대형지도책·대형그림자료 수장용) 1個當面積은 地圖函의 크기가 보통 1200mm(폭)×700mm(깊이)³⁹⁾이므로 利用者面積까지 포함하여 3.3~4.5m²⁴⁰⁾, 버티칼파일 캐비닛 1個當面積은 캐비닛의 標準크기(legal size)가 보통 450mm(폭)×750mm(깊이)⁴¹⁾이므로 利用者面積까지 포함하여 1.01m²⁴²⁾, 音盤保管函(1,000장 수장)面積은 1個當 1.61m²⁴³⁾, 카세트 테이프保管函(30du 基準) 1個當面積은 1.61m²⁴⁴⁾, 슬라이드 캐비닛(5,000장 基準) 1個當面積은 1.58m²⁴⁵⁾, 트랜스

38) 톰프슨은 1m²당 150권(Thompson, op. cit., p.172), 하바드-윌리암스는 160권(Havard-Williams, op. cit., p.44), 고hen은 7단의 경우 196권(cohen, op. cit., p.80)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西洋書에 의한 측정인 관계로 筆者가 東洋書와 西洋書의 收藏量을 조사하여 평균하여 본 결과 1m²당 165권(6단 2편 양면서가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9) Pierce, op. cit., p.115.

40) Metcalf, op. cit., p.111.

41) Pierce, op. cit., p.83.

42) 이의 수치는 폭 0.45m×(깊이 0.75m+서랍의 맨 인쪽 자료검색 가능길이 0.6m+이용자 검색공간 0.9m)=1.025m²의 산출근거에 의함.

43) 엘즈워스, op. cit., p.126.

44) 카세트 테이프 보관함이나 목록카드함은 마이크로 카드함과 동일 규격의 카드함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카드 20,000매(30du 기준) 수장면적은 1.61m²임 (Ibid.)

45) Ibid.

페런시 캐비넷 1개당 面積은 1.58m^2 ⁴⁶⁾, 마이크로필립保管函(800枚 基準) 1개당 面積은 1.61m^2 ⁴⁷⁾, 마이크로피쉬保管函(20,000枚 基準) 1개당 面積은 2.58m^2 ⁴⁸⁾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③ 職員空間基準 - 職員 1人當 面積에 대한 外國의 基準이나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WICHE基準은 館長 22.3m^2 , 副館長 14.86m^2 , 課長級 13.94m^2 , 司書 11.15m^2 , 書記 9.29m^2 , 技士 23.23m^2 , 회의실 및 직원휴계실 1人當 2.32m^2 를⁴⁹⁾, 캘리포니아주립대학기준은 管理職 및 部·課長은 13.94m^2 , 司書는 10.22m^2 , 書記는 7.43m^2 를⁵⁰⁾, 메트카프는 館長 $36\sim37\text{m}^2$ (회의실 겸용이 아닐 경우, 館長祕書 11.6m^2 +접견실공간, 職員 $9.29\sim11.6\text{m}^2$, 補助手 4.6m^2 , 직원휴계실 1人當 $0.93\sim1.4\text{m}^2$ 를⁵¹⁾, 코헨(A.Cohen and E.Cohen)은 職員 1人當 9.29m^2 를⁵²⁾, 톰프슨(Godfrey Thompson)은 部署長 $6.9\sim9.29\text{m}^2$, 整理擔當司書 13.94m^2 , 기타 專門家 $9.29\sim11.6\text{m}^2$, 타이피스트 등 書記 $6.9\sim8\text{m}^2$ 를⁵³⁾, 하바드-윌리암스(P.Havard-Williams)는 職員 1인당 11m^2 를⁵⁴⁾, 日本의 「建築計劃設計(集)」과 韓國圖書館協會는 事務室 1人當 $6\sim12\text{m}^2$, 集會室 1人當 1.2m^2 전후⁵⁵⁾를 基準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上記한 基準 및 여

46) 마운트된 트랜스 페런시 1장의 규격이 $26\times22\text{cm}$ 이므로 캐비넷 서랍에 二列로 區別할 경우 버티칼 파일 캐비넷(1.01m^2)보다 규격이 약간 크기 때문에 1.58m^2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여겨짐.

47) 엘즈워스, op. cit., p.125.

48) 마이크로피쉬(표준크기 $10\times15\text{cm}$)가 마이크로 카드($7.5\times12.5\text{cm}$)보다 1.6배가 크므로 마이크로 카드함(20,000枚 基準) 1개당 面積 1.61m^2 (Ibid.)의 1.6배는 2.58m^2 가 됨.

49) Ibid., pp.130~140.

50) Ibid., pp.129~130.

51) Metcalf, op. cit., pp.129~132.

52) Cohen, op. cit., p.82.

53) Thompson, op. cit., pp.120~121.

54) Havard-Williams, op. cit., p.46.

55) 建築計劃設計 9 : 圖書館, 愈吉濬譯(서울 : 產業圖書出版公社, 1983), pp.33~34 ; 韓國圖書館協會 編, 公共圖書館의 施設(서울 : 同協會, 1966), p.94.

리 學者들의 見解와 우리나라 成人の 標準體位를 고려하여 볼 때 職員 1人當 面積은 收書業務職員 $10m^2$ ⁵⁶⁾, 整理業務職員, $11.6m^2$ ⁵⁷⁾, 貸出職員 $6.9m^2$, 建物管理業務職員과 各業務補助職員 및 複寫業務職員 $6.9m^2$, 視聽覺機材擔當技士 $23.2m^2$, 其他 諸職員 $9.2m^2$, 課長 $14m^2$, 館長室 $42m^2$ (간부회의 겸용), 館長附屬室 $15m^2$ (접대실 겸용), 分館長室 $30m^2$ (간부회의 겸용), 職員會議室 $2m^2$, 職員세미나실 $1.6m^2$ ⁵⁸⁾, 職員休憩室 $1.2m^2$ 를 最低基準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④ 圖書館의 目的 以外의 使用空間基準 – 이는 利用者 · 資料 · 職員空間을 제외한 복도 · 계단 · 로비 · 화장실 · 식당 · 휴게실 · 기계실 · 창고 · 전기실 등 부대시설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⁵⁹⁾, 이에 대한 學者들의 見解를 보면, 메트카프는 全體面積의 25~30%를⁶⁰⁾, 코헨은 25%를⁶¹⁾, 日本의 「建設計劃設計(集)」은 현관홀 · 라카룸 · 안내실 · 각연실 등의 公衆用空間 및 其他空間으로 全體面積의 20%⁶²⁾를 제시하고 있는데, 20世紀初半에는 이 空間이 全體面積의 50%를 차지하였으나, 建設技術의 上向과 實用性의 選好傾向으로 점점 減少되어 온 點⁶³⁾을 감안하여 볼 때 코헨의 主張처럼 全體面積의 25%를 이에 대한 적정기준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56) 收書業務는 資料選擇道具의 備置, 注文 및 檢受, 裝備 등의 業務를 위한 보조책상의 비치가 요구되므로 1人當 $10m^2$ 가 적정하지 않을까思料됨.
- 57) 整理業務는 整理用道具 및 整理를 위한 많은 圖書의 備置에 필요한 보조책상이 요구되므로 其他部署 司書職員 1人當 面積보다 넓은 空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11.6m^2$ 가 바람직하다고 思料됨.
- 58) 이는 筆者が 수립한 公式(6인용 책상길이 $2.5m +$ 측면통로 $0.9m$) \times (책상폭 $1.2m +$ 책상-座面길이 $0.54m +$ 후면통로 $1.2m$) $\div 6$ 명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임.
- 59) Metcalf, op. cit., p.316 ; Cohen, op. cit., p.66.
- 60) Metcalf, loc. cit..
- 61) Cohen, op. cit., p.67.
- 62) 建築計劃設計 9 : 圖書館, p.35.
- 63) Metcalf, op. cit., pp.316~320.

지금까지 圖書館施設의 4大空間基準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 밖에 各室別 所要面積算出時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事項으로는 各室에 家具 등의 備品을 잘 配置한다 하더라도 上記 基準에 따라 한 치의 空間損失도 없이 配置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建物의 內部空間設計에서도 室內構造가 正方形이 아닌 以上 不必要한 空間이 전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가 어려우므로 利用者·資料·職員空間의 경우에는 코헨의 주장처럼 最小限 6%의 室內構造 및 備品配置損失率(configuration loss)을 上記 空間의 純面積(net basis)에 반드시 加算시키는 것⁶⁴⁾이 合理的이라 하겠다.

III. 慶北大學校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

慶北大學校圖書館은 1952年 2月 農科大學, 師範大學, 醫學大學에서 保有하고 있던 資料 8,895卷을 인수하여 1953年 5月 假建物에서 開館을 봄으로써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56年 12月 1日 圖書館建物(現 博物館建物) 1, 2層을 新築하여 移轉하였으나, 奉仕對象者規模 및 藏書量의 增加로 인한 收容能力의 不足으로 1982年 3月 現在의 位置에 中央圖書館을 新築·移轉한 한편, 1966年 9月에는 醫科大學分館을, 同年 12月에는 科學館分館을 設置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⁵⁾ 이러한 沿革을 가진 本校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I. 藏書

1987年 12月 31日 現在本校圖書館의 藏書現況은 〈表-1〉과 같이 藏書數는 42만여권으로, 學生 1人當 21.85券($421,682\text{권} \div 19,300\text{명}$ (학부 및 대학원생 총정원수))으로 나타나 大學設置基準令附則 經過措置에서 1987年末까지 完備키로 되어 있는 法的基準인 579,000卷(學生 1人當 基本藏書 30券 $\times 19,300$ 名)에 158,000餘卷이 未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4) Cohen, op. cit., pp.81~84.

65) '88~'89 慶北大學校要覽(大邱: 慶北大學校 出版部, 1988), p.286.

<表-1> 藏書現況 (1987. 12. 31 現在)

자료 유형	장서 수(권)	비고
일반도서	336,570	
참고도서	23,207	
정기간행물	32,672(제본분)	총수: 2,433종(구입 1,001 수증 1,432종)
학위논문	14,338	석사학위논문 제본분 9,868권 박사학위논문 4,570권
고서	14,905	
계	421,682	

한편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表-1>과 같이 2,433種(구입 1,001종, 수증 1,432종)으로, 學生 1人當 0.13種, 1學年當 平均 30.4種으로 나타나 1987年末까지 완비키로 된 法의 基準 1,010種(1987年 12月 現在 人文系 14科×10種+社會系 19科×10種+自然系 42科×15種+家政·藝體能系 5科×10種)은 2.4倍 초과하고 있으나, <II-1-1>에 제시된 圖書館法施行令 改定令案의 基準인 4,300種(1988年 10月 現在 人文系 15科×30種+家政·藝體能系 5科×20種+社會系 19科×50種+自然系 44科×50種+醫學系 3科×200種)에 비추어 볼 때 훨씬 未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上記한 現況을 外國의 現況과 比較하여 보면, 日本은 1985年 現在 95個 國立大學 學生 1人當 藏書量 平均 133.8卷, 年次增加量 平均 4.9卷⁶⁶⁾, 1個校當 定期刊行物 平均 5,310種, 學生 1人當 平均 1.12種⁶⁷⁾, 美國은 1984年 現在 50個 綜合大學 學生 1人當 平均 163.8卷, 年次增加量 平均 4.96卷, 1個校當 定期刊行物 平均 39,442種, 學生 1人當 平均 1.84種으로 나타나,⁶⁸⁾ 大學構成員들의 教授-學習過程이나 研究에

66) 日本書庫協會 編, 書庫年鑑, 1985(東京: 同協會, 1985), p.283, 287의 統計를 分析한 것임.

67) Ibid., p.283, 286, 291의 統計를 分析한 것임.

68) ARL Statistics, 1983~84, pp.33~34의 統計를 分析한 것임.

필요한 知識의 總量에는 그처럼 큰 격차가 없을진데 本校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國內 43個 綜合大學圖書館⁶⁹⁾과 比較하여 보더라도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年 3月末 現在 學生 1人當 基本藏書는 43個大學 中 31位, 年次增加圖書는 21位, 定期刊行物種數는 19位, 資料費豫算額은 21位로, 中間그룹水準(1人當 藏書量은 下位그룹)에 머물고 있다.

<表-2> 國內綜合大學圖書館 學生 1人當 藏書數 및 資料費豫算
(1988.3.31現在)

구분 학교명	기본장서		연차증가도서		정기간행물		자료비예산	
	권수	순위	권수	순위	종수	순위	예산액	순위
강원대	20.91	35	2.24	19	0.11	23	29,360	7
경북대	22.58	31	2.13	21	0.14	19	22,780	21
경상대	12.83	43	1.34	42	0.10	26	22,880	19
부산대	24.70	23	2.13	21	0.16	15	34,090	4
서울대	59.50	1	1.76	31	0.30	7	81,060	1
전남대	16.18	40	1.49	39	0.15	18	32,500	5
전북대	17.22	38	1.39	41	0.21	12	29,190	8
제주대	22.28	32	2.69	12	0.22	10	26,920	12
충남대	15.62	42	1.64	37	0.20	13	24,890	15
충북대	17.01	39	1.97	27	0.13	20	27,230	11
전국대	28.28	17	1.71	33	0.09	29	19,150	34
경기대	25.90	19	1.83	28	0.07	33	21,560	25
경남대	24.80	22	3.18	7	0.11	23	23,870	17
경희대	45.51	2	1.99	26	0.26	9	17,310	41
계명대	24.15	24	1.64	37	0.09	29	21,520	26
고려대	38.16	4	2.80	10	0.19	14	23,270	18

- 69) 國內綜合大學數는 1987年末 現在 總 47個 大學(문교법전, 1987년판; 별책부록(서울: 교학사, 1987), pp.239~365)이지만 한국교원대는 新設大學이고, 경성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는 大學院生數에 대한 資料를 입수하지 못하여 本 統計分析에서 除外하였다.
- 70) 학생수는 학부의 경우 1987년도 학생정원령을, 대학원생의 경우 국립대는 國立大學圖書館報, 6輯, p.85, 사립대는 全國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現況 및 디렉토리, 1988. 3, pp.4-90을 근거로 하였으며, 학생 1인당 장서수 및 자료 비예산액은 한국도서관통계, 1988, pp. 36-47에 수록된 통계를 분석한 것임.

구분 학교명	기본장서		연차증가도서		정기간행물		자료비예산	
	권 수	순 위	권 수	순 위	종 수	순 위	예산액	순 위
국민대	29.87	15	1.48	40	0.07	33	18,660	36
단국대	21.50	34	2.00	24	0.22	10	18,620	37
대구대	22.70	30	2.18	20	0.06	38	18,980	35
동국대	32.03	13	3.54	4	0.16	15	17,870	39
동아대	22.80	29	1.81	29	0.16	15	28,220	9
동의대	25.72	20	2.39	16	0.09	29	21,750	24
명지대	35.08	9	4.24	2	0.10	26	20,390	29
상명여대	36.97	5	3.06	9	0.09	29	22,020	23
서강대	34.66	10	2.00	24	0.35	4	37,520	3
성균관대	30.98	14	1.68	34	0.31	6	17,510	40
성신여대	36.91	6	3.98	3	0.29	8	19,500	31
숙명여대	43.19	3	3.18	7	7.74	1	16,460	42
숭실대	27.41	18	2.05	23	0.11	23	22,880	19
아주대	20.37	36	2.29	18	0.10	26	27,460	10
연세대	36.56	7	2.49	14	0.44	2	31,940	6
영남대	22.87	28	0.97	43	0.04	43	12,230	43
울산대	15.64	41	2.73	11	0.13	20	26,170	13
원광대	22.13	33	2.39	16	0.10	26	22,740	22
이화여대	35.92	8	3.39	5	0.32	5	65,130	2
인하대	23.15	26	1.80	30	0.07	33	21,160	28
전주대	17.27	37	2.52	13	0.06	38	21,170	27
조선대	32.89	12	1.66	35	0.13	20	18,440	38
청주대	25.01	21	3.21	6	0.06	38	19,440	32
한남대	23.02	27	2.42	14	0.07	33	19,440	32
한양대	23.66	25	1.65	36	0.05	42	25,760	14
홍익대	34.09	11	5.12	1	0.40	3	24,640	16
효성여대	28.30	16	1.74	32	0.07	33	19,890	30

따라서 大學教育의 內實化를 기하고, 大學院中心大學으로의 轉換과 교수들의 研究活動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보다 積極的 인 藏書開發이 要望된다 하겠다.

2. 組織 및 職員

1988年 8月 31日 現在 部署別 職員現況은 〈表-3〉과 같다.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組織構造는 3課 2分館, 職員數는 60名(正司書 24名, 準司書 17名, 資格證非所待者 19名, 兼補職包含의 경우 63名)으로, 組織構造

<表-3> 部署別 및 資格證別 職員現況(1988. 8.31.現在)

과 실(계)	중 앙 도 서 관									과학관 분관	의과대 분관	계
	수서과		정리과		열 람 과							
직급별	서무 회계	수서	동서	양서	국외자료 실(서고)	국내 자료실	참고 자료실	정기간 행물실	전산실			
5급	1		1		1							3
6급	1	1		1	1	1		1	1	1	1	8
7급		1	1	2	1	1	1		1	1	1	10
8급	1		2			1	1	2				7
9급		1	1		2			1				5
조교			2						1		1	4
고용원		3										3
사서요원 (임시직)	1				2	3					1	7
기타 (임시직)	2		1	1		6	2			1		13
계	6	6	8	4	7	12	4	4	3	2	4	60
자	정사서		2	5	2	4	2	1	3	2	1	24
격	준사서	2	1	2	1	3	4	1	1			2
종	비소지자	4	3	1	1		6	2		1	1	19
별	계	6	6	8	4	7	12	4	4	3	2	4
												60

의 경우는 <II-2-2>에서 언급한 組織理論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職員數의 경우는 司書職員에 대한 法的最低基準인 42名(학생수 1,000名까지 4名 + 18,300名 ÷ 1,000名 + (421,682卷 - 20,000卷) ÷ 20,000卷)과 <II-3-1>에서 제시한 算出公式(司書職員의 0.54倍)에 근거하여 산출한 非司書職員 23名, 計 65名이 小要人員인데 비하여 全體의으로는 5名이 未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正司書: 準司書: 資格證非所待者의 構成比率(40% : 25% : 35%)에 의해 산출하여 보면 9級 以上의 法의司書職員의 경우는 正司書 26名, 準司書 16名이 필요시 되나 現員은 正司書가 21名으로 5名이, 準司書가 10名으로 6名 程度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上記한 現況을 外國의 現況과 比較하여 보면, 日本은 1985年 現在 國公立

大學의 경우 職員(臨時職 包含) 1人當 學生數가 109名, 私立大는 206名⁷¹⁾, 美國은 105個 綜合大學 實態를 分析하여 본 結果 1984年 現在 碩士學位 以上의 專門司書 1人當 學生數가 240名⁷²⁾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慶北大學校의 경우는 職員(臨時職 包含) 1人當 322名, 9級以上 正司書 1人當 919名으로 나타나 너무 과중한

〈表-4〉 國內綜合大學圖書館 職員 1人當 學生數(1988. 3.31 現在)⁷³⁾

구분 학교명	전체직원 1인당		정사서 1인당		구분 학교명	전체직원 1인당		정사서 1인당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강 원 대	225.08	6	765.27	20	명 지 대	350.33	22	613.08	9
경 북 대	275.68	12	749.84	18	상 명 여 대	269.38	11	359.17	2
경 상 대	228.06	7	765.64	21	서 강 대	204.34	5	422.33	4
부 산 대	277.29	13	1,016.72	36	성 관 판 대	433.17	32	606.44	8
서 울 대	130.40	1	479.86	5	성 신 여 대	278.58	14	588.11	7
전 남 대	356.18	26	865.00	29	숙 명 여 대	266.58	10	376.35	3
전 북 대	260.73	9	977.75	35	승 실 대	351.72	24	1,055.17	37
제 주 대	143.70	3	1,264.60	39	아 주 대	364.13	27	780.29	24
충 남 대	301.62	16	726.64	15	연 세 대	284.62	15	740.00	17
충 북 대	203.18	4	859.62	27	영 남 대	510.51	41	2,212.22	41
전 국 대	333.63	19	667.25	11	울 산 대	428.82	30	729.00	16
경 기 대	439.42	33	695.75	12	원 광 대	457.50	35	813.33	25
경 남 대	598.43	42	837.80	26	이 화 여 대	313.37	17	767.75	23
경 희 대	241.34	8	703.04	13	인 하 대	720.38	43	756.40	19
계 명 대	484.62	39	2,342.33	42	전 주 대	341.17	20	767.63	22
고 려 대	351.25	23	936.67	33	조 선 대	355.33	25	6,040.67	43
국 민 대	131.66	2	268.38	1	청 주 대	341.78	21	709.85	14
단 국 대	458.33	36	970.59	34	한 남 대	428.67	29	1,543.20	40
대 구 대	333.53	18	905.29	31	한 양 대	495.53	40	646.94	10
동 국 대	398.97	28	576.30	6	홍 익 대	483.06	38	912.44	32
동 아 대	443.00	34	1,181.33	38	효 성 여 대	460.82	37	870.44	30
동 의 대	431.13	31	862.25	28					

71) 日本圖書館協會編, 圖書館年鑑, 1985, pp.286~287에 수록된 통계를 분석한 것임.

72) ARL statistics, 1983~84, p.37에 수록된 실태를 분석한 것임.

73) 학생수는 註 94의 문헌에 근거하였으며, 직원수는 한국도서관통계, 1988, pp.36~47에 수록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음.

奉仕負擔量을 안고 있으며, 法的基準 奉仕藏書量 579,000卷에 도달할 경우에는 요구되는 最低職員數가 司書職員 50名, 非司書職員 27名, 計 77名이 되기 때문에 現水準에서 머문다면 그러한 現狀은 더욱加重될 것으로思料된다. 이 뿐만 아니라 國內 43個 綜合大學圖書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表-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年 3月末 現在 全體職員 1人當 學生數는 12位이지만 正司書 1人當 學生數는 18位로써 中間그룹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 圖書館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質的奉仕를 遂行할 수 있는 유능한 專門司書의 確保가 절실히 要望된다 하겠다.

3. 施設

1988年 8月 31日 現在의 閱覽席 現況은 <表-5>와 같으며, 建物面積 現況은 <表-6>과 같다.

<表-5> 閱覽席 現況(1988. 8.31 現在)

실 별		열람석수(석)
중앙도서관	참 고 자료실	84
	정기간행물실	164
	국내자료실	224
	일반열람실	2,608
소 계		3,080
의대분관	자료실	20
	일반열람실	292
	소 계	312
과학관분관	자료실	8
계		3,400

<表-5>에 나타난 바와 같이 閱覽席數는 3,400席으로서, 大學設置基準令附則(1983. 6. 25 大統領令 第11153號) 經過措置 2項에서 1988年 12月 31日까지 完備키로 되어 있는 法的基準인 3,860席(19,300名×20%)에 460席(2.4%)이 未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6〉 建物面積 現況(1988. 8.31 現在)

부 서 별		면 적(m ²)	비 고
중 앙 도 서 관	참 고 자료실	682.22(190.4평)	
	정기간행물실	1,163.21(352.5평)	정기간행물서고 580.8m ²
	국내자료실	1,259.12(381.6평)	(176평) 포함
	고서실	95.70(29.0평)	
	대출실	145.22(44.0평)	
	서고	1,192.46(361.4평)	
	신문열람대	92.48(28.0평)	
	일반열람실	4,048.96(56.0평)	
	복사실 및 휴게실	143.58(43.5평)	
	소지품보관실	184.96(56.0평)	
수 정 회 관	수서과	198.69(60.2평)	
	정리과	281.84(85.4평)	
	회의실	44.88(13.6평)	
	관장실	42.16(12.8평)	
	컴퓨터실	81.84(24.8평)	
기타공간(로비, 복도, 기계실,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4,612.56(1,397.7평)	법학연구소 및 고시원 348.48m ² (105.6평) 포함
	소계	14,215.88(4,307.8평)	※증축예정 7,000m ² (2,121평)
분 과 판	의대분관	1,025(310평)	
	과학관분관	165(50평)	
판	소계	1,190(360평)	
총 계		15,405.88(4,667.8평)	※증축예정 7,000m ² 포함의 경우 22,405.88m ² (6,788.8평)

한편 建物延面積의 경우는 〈表-6〉과 같이 15,405.88m²(中央館 14,215.88m², 醫大分館 1,025m², 科學館分館 165m²)로, 大學設置基準令에 제시된 法的基準(1988. 7.27부터 施行)인 23,378.85m²(0.73m² × 19,300名 + 80m² + 0.65m²(0.73m² × 19,300名 + 80m²))에 대하여 7,972.97m²(34.1%)가 未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9年 1月부터 增築豫定인 7,000m²를 이에 加算하더라도 972.97m²가 未達한 狀態에 놓여 있다. 또한 〈II-3-2〉에서 살펴 본 要素單位別 空間基準을 根據로 하여 現在狀態에서의 圖書館(分館包含)의 所要面積을 算出하여 보면,

이용자공간.....열람석	$3,400 \text{석} \times 2 \text{m}^2 = 6,800 \text{m}^2$
자료공간.....서고	$271,475 \text{권} \div 600 \text{권} \times 3.63 \text{m}^2 = 1,644.39 \text{m}^2$
국내자료실	$80,000 \text{권} \div 600 \text{권} \times 5.4 \text{m}^2 = 720 \text{m}^2$
참고자료실	$23,207 \text{권} \div 400 \text{권} \times 5.4 \text{m}^2 = 313.3 \text{m}^2$
정기간행물실	
제본분	$32,672 \text{권} \div 290 \text{권} \times 3.63 \text{m}^2 = 408.96 \text{m}^2$
석사학위논문 제본분	
	$9,868 \text{권} \div 290 \text{권} \times 5.4 \text{m}^2 = 183.75 \text{m}^2$
박사학위논문	$4,570 \text{권} \div 600 \text{권} \times 5.4 \text{m}^2 = 41.13 \text{m}^2$
<u>최신간호 전시</u>	<u>$2,433 \text{종} \div 36 \text{종} \times 5.4 \text{m}^2 = 364.95 \text{m}^2$</u>
소계	$3,676.48 \text{m}^2$
직원공간(兼補職包含)…63명×평균 $9.2 \text{m}^2 = 579.6 \text{m}^2$	
기존공유면적.....	$4,612.56 \text{m}^2$
총계	$15,668.64 \text{m}^2$

로 나타나, 利用者·資料·職員空間만 하더라도 現在도 262.76m^2 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國內 43個 綜合大學圖書館과 比較하여 보더라도 <表-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年 3月末 現在 學生 1人當 建物面積은 32位, 學生數에 대한 閱覽席 比率은 40位로써 下位그룹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圖書館新築이란 많은豫算이 所要될 뿐만 아니라, 에반스(G.E.Evans)가 美國의 350個 圖書館을 對象으로 調査하여 본 결과 처음요구에서부터 完工까지 8.35年⁷⁴⁾이 소요될 만큼 長期間이 要求되기 때문에 上記한 本校圖書館의 實態와 奉仕對象者·資料·職員의 增加趨移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15~20年은 유지될 수 있는 圖書館施設의 擴充이 시급히 要請된다.

74) G.Eduard Evans, Management Techniques for Librarians, 2nd ed. (New York : Academic Press, 1983), p.149.

〈表-7〉 國內綜合大學圖書館 學生 1人當 建物面積 및 閱覽席數 現況(1988. 3.31 現在)⁷⁵⁾

구분 학교명	건물연면적		열람석		구분 학교명	건물연면적		열람석	
	평수	순위	학생수에 대한비 (%)	순위		평수	순위	학생수에 대한비 (%)	순위
강원대	0.32	23	22.65	29	명지대	0.39	13	33.41	4
경북대	0.26	32	18.14	40	상명여대	0.28	30	28.26	13
경상대	0.37	19	27.80	16	서강대	0.50	7	29.91	9
부산대	0.25	36	20.10	34	성균관대	0.40	12	30.24	7
서울대	0.52	6	25.40	20	성신여대	0.20	38	21.73	32
전남대	0.20	38	16.66	43	숙명여대	0.56	3	29.63	10
전북대	0.23	37	21.90	31	숭실대	0.44	9	34.43	2
제주대	0.38	15	22.93	28	아주대	0.74	2	29.48	11
충남대	0.30	28	20.33	35	연세대	0.27	31	17.82	41
충북대	0.38	17	26.85	18	영남대	0.31	24	23.18	27
전국대	0.26	32	20.17	36	울산대	0.17	42	17.78	42
경기대	0.49	8	31.06	6	원광대	0.31	24	28.14	14
경남대	0.30	26	23.51	26	이화여대	0.36	21	26.08	19
경희대	0.38	15	22.16	30	인하대	0.20	38	19.76	37
계명대	0.43	10	24.14	24	전주대	0.43	10	38.30	1
고려대	0.54	4	25.15	21	조선대	0.17	42	18.29	39
국민대	0.29	29	24.79	23	청주대	0.54	4	28.41	12
단국대	0.37	19	30.08	8	한남대	0.30	26	24.88	22
대구대	0.38	15	27.61	17	한양대	0.26	32	19.02	38
동국대	0.39	13	23.74	25	홍익대	0.26	32	32.17	5
동아대	0.19	41	28.10	15	효성여대	0.35	22	21.14	33
동의대	0.80	1	34.26	3					

75) 학생수는 註 94의 문헌에 근거하였으며, 건물연면적과 열람석수는 한국도서관통계, 1988. pp.36-97에 수록된 통계를 기초로하여 분석하였음. 건물연면적 중 전남대의 경우는 통계수치가 부정확하여 國立大學圖書館報, 6輯, p.88을 인용하였음.

IV. 慶北大學校圖書館 發展計劃案(1988~2002)

I. 計劃樹立을 위한 奉仕對象者 規模

發展計劃樹立을 위한 奉仕對象者 類型別豫想定員基準은 93個學科에 <表-8>과 같이 設定하고자 한다.

<表-8> 奉仕對象者 現況(1988.10. 1 現在) 및 計劃上의豫想定員基準

유형	구분	현 정 원(명)	현 원(명)	계획상의 정원기준(명)
학부 학생		17,380	18,694	18,000
일반 대학원생	석사	1,408	1,666	3,000
	박사	517		
교수요원	계	1,925	853	1,000
	교수	732		
	조교	165		
계		897		
총 액		20,202	21,213	22,000

計劃樹立을 위한 奉仕對象者豫算定員規模을 <表-8>과 같이 設定한 것은 學部學生의 경우는 1988학년도부터 入學定員制로 바뀌었기 때문에 1990年까지는 定員數가 계속 減縮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增科 및 增員이 있다 하더라도 2002年까지는 18,000餘名을 넘지 않을 것으로豫想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一般大學院生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年 3% 增加率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假定 아래 增科까지 고려한다면 <表-9>와 같이 2002年까지는 3,000餘名을 넘지 않을 것으로豫想되기 때문이며, 教授要員도 增科 및 增員을 고려한다면 2002年까지는 定員이 現在보다 100餘名 以上 增加될 것으로豫想되어 1,000名으로 設定하였다. 그리고 學科數를 93個 學科로 設定한 것은 1988年 現在 人文系 16科, 社會系 18科, 家政·藝體能系 5科, 自然系 44科, 醫學系 3科, 計 86科로 구성되어 있으나, 1989년도에 노어노문학과가 新設되었으며, 이후 2002年까지는 적어도 藝能系列이 分離되면서 3科 程度, 自然系에 未設置分野 2

科 程度, 藥學系 1科 등 7個科 程度가 더 增設될 것으로豫想되기 때문이다.

〈表-9〉 大學院生 定員 年間豫想增加數(1988~2002)

1988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25명	1,980	2,040	2,100	2,160	2,220	2,280	2,350	2,420
1997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490명	2,560	2,640	2,720	2,800	2,880	비고: 연 3%정도 증가예상		

2. 藏書構成計劃

이미 〈II-1-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學科에 碩·博士課程이 開設되어 있는 綜合大學의 경우에는 적어도 大學院 教授·學習支援 및 研究活動을 위한 集書水準程度는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水準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學生 1人當 70~80卷 以上의 基本藏書量과 1人

〈表-10〉 藏書量 年次增加計劃案(1988~2002)

연도	장서수(권)	연증가책수(권)	연증가율(%)
1987	421,682	—	—
1988	466,000	44,000	10.4
1989	531,000	65,000	14
1990	601,000	70,000	13
1991	676,000	75,000	12.5
1992	757,000	81,000	12
1993	844,000	87,000	11.5
1994	937,000	93,000	11
1995	1,031,000	94,000	10
1996	1,124,000	93,000	9
1997	1,215,000	91,000	8
1998	1,306,000	91,100	7.5
1999	1,397,000	91,000	7
2000	1,487,000	90,000	6.5
2001	1,576,000	89,000	6
2002	1,655,000	79,000	5

當 3卷 以上의 年間增加量 및 學生 1人當 學術雜誌 0.3~0.5種 以上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먼저 藏書規模의 計劃目標와 藏書開發 15年計劃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10>과 같다.

<表-10>에 나타나 바와 같이 藏書規模는豫想學生定員數가 21,000名
程度가 되기 때문에 160餘萬卷(21,000명 × 79권 = 1,659,000권)으로 設
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의 目標到達을 위한 年次計劃은
1987年末까지 完備키로 되어 있는 法的基準(579,000卷)에 未達된 藏書
가 158,000卷이고, 1988年부터는 法的으로 年間 63,000卷(학생 1인당 3
권 × 21,000명)씩을 增加시켜야 하므로 財政形便을 고려하여 볼 때 1988
年부터 1992년까지 5年을 1次目標年度로 設定하고 75萬餘卷 到達을 目
標로 年平均 13%의 成長을, 1993~1997年間의 5年을 2次 目標年度로
設定하여 120萬餘卷 到達을 目標로 年平均 10%의 成長을, 1998~2002
年間의 5年을 3次目標年度로 設定하여 大學院 教授－學習支援 集書段階
인 學生 1人當 70~80卷에 도달할 수 있도록 年平均 6.5%의 成長을 지
속시켜 160萬餘卷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學術雜誌規模의 計劃目標와 15年計劃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11>과 같이 學生 1人當 約 0.3種인 6,000餘種(受贈分 包含의 경우
7,700餘種)을 計劃目標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의 目
標到達을 위한 年次計劃은 1987年末 現在 法的基準에는 이미 도달하였
으나, <III-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圖書館法施行令 改正令案으로 채
택된 最低基準인 4,300種(1988年 10月 現在 86個 學科)이나前述한 바
처럼 2002年까지 7個 學科 增設을 고려할 경우 4,570種(인문계 17과 ×
30종 + 사회계 18과 × 50종 + 가정 · 예체능계 8과 × 20종 + 자연계 46과 × 50
종 + 의학계 4과 × 200종)에는 훨씬 未達하므로 1988年부터 1992년까지 5
年을 1次 目標年度로 設定하고 購入分 2,230餘種(受贈分 包含時 3,770
餘種) 到達을 目標로 年平均 17.5%(受贈分 包含時 年平均 9.1%)의 成
長을, 1993~1997年間의 5年을 2次 目標年度로 設定하여 購入分 4,100
餘種(受贈分 包含時 5,760餘種) 到達을 目標로 年平均 13%(受贈分 包

<表-11> 學術雜誌 年次增加計劃案(1988~2002)

구분 연도	구 입			수 중			계		
	종 수	연증가수	연증가율 (%)	종 수	연증가수	연증가율 (%)	종 수	연증가수	연증가율 (%)
1987	1,001	-	-	1,432	-	-	2,433	-	-
1988	1,174	173	17.3	1,450	※구입과 달라서	1.40 1.37	2,634	193	7.93
1989	1,397	223	19.0	1,480	연증가	1.35	2,877	243	9.23
1990	1,648	251	18.0	1,500	종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	1.33 1.32	3,148	271	9.42
1991	1,928	280	17.0	1,520	문에 연 간 성장	1.28 1.27	3,448	300	9.53
1992	2,236	308	16.0	1,540	종수를 정도로 추산하였 음.	1.25 1.23 1.19	3,776	328	9.51
1993	2,571	335	15.0	1,560	20종	1.20	4,131	355	9.40
1994	2,931	360	14.0	1,580	20종	1.28	4,511	380	9.20
1995	3,312	381	13.0	1,600	20종	1.27	4,912	401	8.89
1996	3,709	397	12.0	1,620	20종	1.25	5,329	417	8.49
1997	4,116	407	11.0	1,640	20종	1.23	5,756	427	8.01
1998	4,527	411	10.0	1,660	20종	1.22	6,187	431	7.49
1999	4,934	407	9.0	1,680	20종	1.20	6,614	427	6.90
2000	5,328	394	8.0	1,700	20종	1.19	7,028	414	6.26
2001	5,700	372	7.0	1,720	20종	1.18	7,420	392	5.58
2002	6,042	342	6.0	1,740	20종	1.16	7,782	362	4.88

含時 年平均 8.8%)의 成長을, 1998~2002年間의 5年을 3次 目標年度로 設定하여 學生 1人當 0.3種 程度의 水準에 도달할 수 있도록 年平均 8% (受贈分 包含時 年平均 6.2%)의 成長率을 지속시켜 6,000餘種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 밖에 最低基準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調查·研究나 情意的인 資料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圖書以外의 資料도 갖추어야 하는 바, 1988~2002年까지 地圖資料 2,000매, 그림자료 5,000장, 音盤 10,000매, 녹음테프 5,000개, 슬라이드 10,000매, 비디오테프 2,000개, 트랜스페런시 5,000장, 마이크로필름 3,000릴, 마이크로피쉬 100,000장, 신문 20종(20종×2부=40부) 정도의 蔽集計劃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금까지 藏書開發計劃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計劃이라 하더라도豫算的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II-1-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上記한 藏書開發計劃目標를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2002年까지는 學校總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의 5~6%를 資料購入費로 配定하고, 目標에 到達한 然後에는 4%程度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職員 및 組織計劃

前述한豫想學生定員數와 藏書量 年次增加計劃案을 근거로 한 法的 司書職員數와 <II-2-1>에 제시된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비소지자 의 구성비율을 근거로 한 非司書職員數에 대한 15年計劃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12>와 같다.

<表-12> 圖書館職員 年次增員計劃案(198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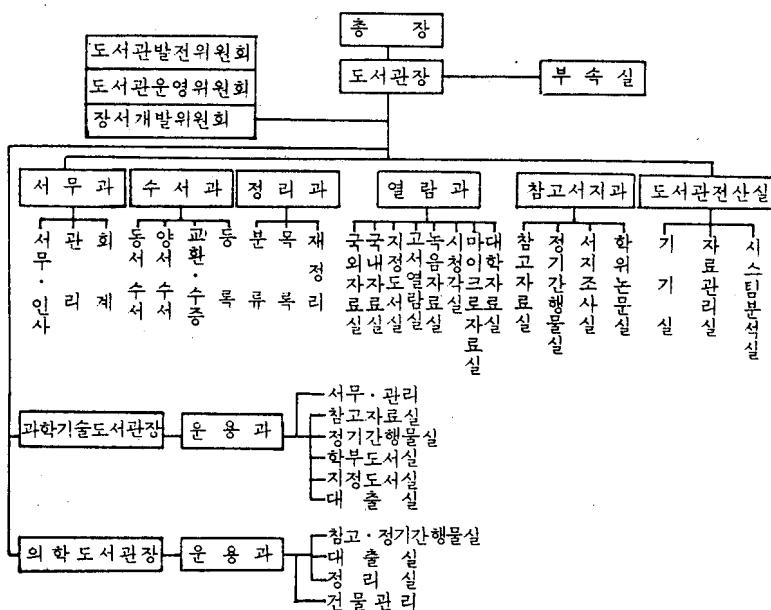
구분 연도	학생정원 수 (명)	장서수(권)	사서직원수(명)			비사서 직원수 (명)	총계	연 증 원 수(명)			
			정사서	준사서	계			정사서	준사서	비사서 직원 계	계
1987	19,300	421,682	21	10	31	29	60	-	-	-	-
1988	19,305	466,000	27	17	44	24	68	6	7	-5	8
1989	19,980	531,000	30	19	49	26	75	3	2	2	7
1990	20,040	601,000	32	20	52	28	80	2	1	2	5
1991	20,100	676,000	34	22	56	30	86	2	2	2	6
1992	20,160	757,000	37	23	60	32	92	3	1	2	6
1993	20,200	844,000	39	25	64	35	99	2	2	3	7
1994	20,280	937,000	42	27	69	37	106	3	2	2	7
1995	20,350	1,031,000	46	28	74	40	114	4	1	3	8
1996	20,420	1,124,000	48	30	78	42	120	2	2	2	6
1997	20,490	1,215,000	51	32	83	45	128	3	2	3	8
1998	20,560	1,306,000	54	34	88	48	136	3	2	3	8
1999	20,640	1,397,000	57	36	93	50	143	3	2	2	7
2000	20,720	1,487,000	60	37	97	52	149	3	1	2	6
2001	20,800	1,576,000	63	39	102	55	157	3	2	3	8
2002	20,880	1,655,000	65	41	106	57	163	2	2	2	6

<表-12>에 나타나 바와 같이 2002年的 職員規模는豫想學生定員 21,000名, 前述한 藏書開發目標 160餘萬卷의 경우 159名(兼補職者 3名)包

含의 경우 162名)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의 目標達成을 위한 年次計劃은 藏書開發의 1次目標年度인 1992年까지는 現職員數보다 32名을 2次目標年度인 1997年까지는 現職員數보다 68名을, 3次目標年度인 2002年까지는 現職員數보다 99名을 增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上記한 年次增加計劃案과 <II-2-2>에 제시된 圖書館組織上의 統率範圍의 原理에 근거하여 組織構造規模計劃案을 제시하여 보면, 1課의 適正人員이 3~4係, 18~24名이므로 1989年까지는 現在와 마찬가지로 3課, 1990~1992年(80~92名)은 4課, 1993~1995年(99~114名)은 5課, 1996~1998年(120~136名)은 6課, 1999~2000年(143~149名)은 7課, 2001~2002年(157~163名)은 7~8課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上記한 分析結果를 基礎로 最終目標年度인 2002年의 組織構造模型案과 部署別 職員數模型案을 제시하여 보면 <圖-1>, <表-13>과 같다.



<圖-1> 慶北大學校 圖書館 組織圖(案) (2002年 基準)

〈表-13〉 部署別 職員數 模型(案) (2002年 基準)

구분	부서명		직원수(명)		구분	부서명		직원수(명)	
	과	실 또는 직무	업무별	계		과	실 또는 직무	업무별	계
중앙도서관	서무과	과장부속실 서무·인사계 업무보조 건물관리	1 1 4 3 1 5	15	중앙도서관	과장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서지조사실 학위논문실	1 3 6 4 2	16	
	수서과	과장 서무 교환·기증 등록 업무보조	1 8 1 5 2	17		실기자료관리실 시스템분석실	1 4 1 5	11	
	정리과	과장 분류·복본조사 편재정리 카드배열	1 9 10 3 3	26		과장 서무·관리 건물관리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1 2 5 3 6	31	
	열람과	과장 국내자료실 국외자료실 지도서실 고서열람실 녹음자료실 시청각실 마이크로자료실 대학사료실	1 11 4 3 2 2 2 2 1	28		과장 부도서실 도서실 출판부 정도출판부 정도출판부 정도출판부 정도출판부 정도출판부	1 2 5 7 3 4		
	과학기술도서관	과장 운용과	1 2 5 3 6			과장 운용과	1 2 5 4	15	
	의학도서관	과장 운용과	1 2 5 4			과장 운용과	1 2 5 4	15	
		총계				총계		159	

이 중에서 組織構造模型案은 慶北大學校圖書館의 組織構造가 目的 또는 機能에 의한 部署設定方法을 採擇하고 있어 現行方法을 그대로 採擇하였으며, 部署別 職員數도 業務分析과 標準作業量 產出이 곤란한 관계로 現在의 部署別 職員構成比率과 一般的의 見解를 基礎로 小要因員數만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였으며, 圖書館電算室을 課水準으로 編成한 것은 圖書館資料란 계속적인 成長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中央館은 물론 分館

까지 토탈시스템 (total system)으로 運營하려면 獨립된 大型컴퓨터실과 運營要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施設計劃

圖書館의 規模란 5%의 成長率을 유지할 경우 대체로 20年이면 2倍以上으로 成長하기 때문에⁷⁶⁾ 圖書館을 新築할 때는 적어도 20~30年⁷⁷⁾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本研究에서는 藏書와 職員規模를 15年計劃으로 樹立하였기 때문에 最終目標年度인 2002年까지 15年 維持를 위한 施設計劃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室別 및 空間構成要素別 所要面積

<II-3-2>에 제시된 要素單位別 空間基準案을 적용하여 產生한 室別 및 空間構成要素別 所要面積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⁸⁾

가. 全體 및 室別所要面積

1988年부터 2002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全體所要面積은 <表-14>와 같다.

<表-14> 全體所要面積(案)

구분 요소	현황(1987.12.31 현재)				계획				부족분(증가 및 증축 요구량)
	중앙 도서관	과학관 분관	의대 분관	계	중앙 도서관	과학기술 도서관	의학 도서관	계	
장서량(권)	388,857	7,468	25,357	421,682	810,000	680,000	110,000	1,600,000	1,178,318
정기간행물 (종)	2,023	36	374	2,433	3,260	3,470	1,050	7,780	5,757
열람석수(석)	3,080	8	312	3,400	2,910	2,330	460	5,700	2,300
직원수(명)	55	3	5	63	114	32	16	162	99
면적(m ²)	14,216	165	1,025	15,406	21,200	15,520	3,300	40,020	24,614(2개분 관 신축사는 25,804)

76) Cohen, op. cit., PP.80~84.

77) 韓國圖書館協會, 公共圖書館의 施設, p.75 ; Cohen, loc. cit.

78) 各室別 所要面積 產生 根據는 孫正彪 등, “慶北大學校圖書館 發展計劃에 관한 研究,”(未刊本) (大邱 : 慶北大學校, 1989.8), pp.62~104 參照.

<表-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計劃目標年度인 2002年의 藏書量 160萬卷, 定期刊行物 7,780種, 閱覽席數 5,700席, 職員數 162名(兼補職者 3名 包含)을 收容할 수 있는 全體所要面積은 40,020m²로 나타나 24,614m²(2個分館 新築時는 25,804m²)가 부족하므로, 1989年부터 中央圖書館에 増築豫定(이미 確定됨)인 7,000m²와 더불어 假稱 科學技術圖書館(現科學館分館) 15,520m², 假稱 醫學圖書館(現 醫大分館) 3,300m², 計 18,820m²(既存分館面積 고려시는 17,604m²)의 新築擴張이 要求되고 있다. 여기서 中央圖書館과 同一캠퍼스 内에 位置하고 있는 科學技術圖書館의 大規模 新築을 제안한 것은 첫째, 大學의 規模가 커지고 藏書規模가 커지면 中央圖書館 一元化보다는 中央館을 中心으로 하여 주변에 大學構成의 特性에 알맞은 主題別 專門圖書館을 分館形態로 設置하여 運營하는 것이 利用上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⁷⁹⁾ 學問分野의 特性上 比較的人文·社會科學分野 奉仕對象者の 利用度가 낮을 뿐만 아니라, 1988年10月 現在만 하더라도 이 分野의 學科數가 44個學科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科學技術分野資料를 우선적으로 分離시켜 奉仕構造를 再體制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現 中央館 敷地에는 増築의 限界가 있고, 세째, 工科大學과 自然科學大學의 경우는 中央館의 거리가 멀어 利用上 不便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所要面積을 다시 各 室別로 제시하여 보면 <表-15>와 같다.

<表-15>와 같이 各 室別 所要面積은 總 32,245m², 中央圖書館 16,959m², 科學技術圖書館 12,414m², 醫學圖書館 2,872m²를 配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나. 空間構成 要素別 所要面積

圖書館의 空間構成要素는 利用者空間, 資料空間, 職員空間, 圖書館目的以外의 使用空間의 네부분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 上記한 各室別 所要面積을 이들의 空間構成要素別로 配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79) 佐藤 仁, 圖書館施設の建築計劃に関する研究(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67), P.82; 李重雨 等, “城西 캠퍼스 中央圖書館 建築基本計劃(案),” (未刊本)(大邱:啓明大學校, 1988), p.8.

〈表-15〉 各 室別 所要面積(案)

실명	중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의학도서관	계
참 고 자 료 실	685m ²	533m ²	1,205m ²	2,423m ²
서 지 조 사 실	400			400
정 기 간 행 물 실	2,316	2,674		4,990
학 위 논 문 실	552			552
국내자료실 (학부도서실)	1,598	965		2,563
지 정 도 서 실	305	269		574
고 서 열 램 실	373			373
녹 음 자 료 실	186			186
시 청 각 실	112			112
마이크로자료실	208			208
복 사 실	64	45		109
도서관전산실	533	111		644
서 고	3,420	3,156	484	7,060
대 출 실	55	40	72	167
신 문 열 램 실	100	60		160
대학사료실	193			193
일 반 열 램 실	4,700	4,408	972	10,080
관 장 실	42	관 장 실 30	관 장 실 30	102
관 장 부 속 실	15	과 장 실 15	과 장 실 15	45
서 무 과	101	서 무 19	정 리 실 63	183
장 서 개 발 과	220		전물관리 15	235
정 리 과	370			370
직 원 회 의 실	60	54		114
직 원 세 미 나 실	224			224
직 원 휴게실	127	35	16	178
계	16,959	12,414	2,872	32,245
도서관목적이외 사용공간	4,241	3,106	428	7,775
총 계	21,200	15,520	3,300	40,020

① 利用者空間

利用者空間은 다시 資料室, 一般閱覽室, 非讀書用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各室의 閱覽席數와 所要面積(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16~18〉과 같다.

여기서 利用者空間의 所要面積算出을 위한 閱覽席數는 非讀書用室의 座席數를 제외하고, <II-3-1>에서 우리나라 實情을 고려하여 제시한 바 있는 「閱覽席基準案」을 根據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非讀書用室은 視聽覺室의 80名 收容座席과 마이크로리더 및 컴퓨터 단말기 각 30台用 座席을 기준으로 하였다.

〈表-16〉 資料室別 座席數 及 所要面積(案)

구 분	중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의학도서관		계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실명								
참고자료실	100	212	80	170	70	149	250	531
서지조사실	60	127					60	127
정기간행물실	150	318	150	318			300	636
학위논문실	70	149					70	149
국내자료실 (학부도서실)	250	530	100	212			350	742
지정도서실	80	170	70	149			150	319
고서열람실	40	85					40	85
녹음자료실	60	127					60	127
대학자료실	20	42					20	42
계	830	1,760	400	849	70	149	1,300	2,758

〈表-17〉 一般閱覽室 座席數 及 所要面積(案)

구 분	중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의학도서관		계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좌석수(석)	면적(m ²)
봉사대상자								
학부학생	1,726	3,655	1,563	3,317	215	455	3,504	7,427
대학원생	250	740	290	858	140	414	680	2,012
교수요원	104	305	77	233	35	103	216	641
계	2,080	4,700	1,930	4,408	390	972	4,400	10,080

<表-18> 非讀書用室別 座席數 및 所要面積(案)

구 분 실 명	중 앙 도 서 관		과학기술도서관		계	
	좌석수(석)	면적 (m ²)	좌석수(석)	면적 (m ²)	좌석수(석)	면적 (m ²)
시 청 각 실	80	50			80	50
마이크로자료실	30	111			30	111
단 말 기 실	30	111	30	111	60	222
계	140	272	30	111	170	383

<表-16~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資料室의 경우는 中央圖書館 830席에 1,760m², 科學技術圖書館 400席에 849m², 醫學圖書館 70席에 149m², 計 1,300席에 2,758m²를, 一般閱覽室의 경우는 中央圖書館 2,080席에 4,700m², 科學技術圖書館 1,930席에 4,408m², 醫學圖書館 390席에 972m², 計 4,400席에 10,080m²를 配定하여 法的 閱覽席數에 대한 總所要面積을 5,700席에 12,838m²(2,758m²+10,080m², 1座席當 平均 2.252m²)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非讀書用室의 경우는 中央圖書館 140席, 272m², 科學技術圖書館 30席, 111m², 計 170席, 383m²(1座席當 平均 2.253m²)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職員空間

各室別職員數와 所要面積(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19>와 같다.

<表-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職員空間의 所要面積은 中央圖書館의 경우 114名에 1,155m², 科學技術圖書館은 32名에 250m², 醫學圖書館은 16名에 180m², 計 162名에 1,585m²(職員 1人當 平均 9.78m²)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資料空間

資料空間은 다시 圖書와 非圖書資料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各室의 資料數와 所要面積(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20>과 같다.

<表-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資料空間의 所要面積은 中央圖書館의 경우 圖書 81萬卷에 7,510m², 定期刊行物을 비롯한 非圖書資料 165,300點과 地圖函 4個 및 버티칼파일 資料函 16個에 543m², 計 8,053m², 科學技術圖書館은 圖書 68萬卷에 6,217m², 非圖書資料 3,490點과 버티칼

<表-19> 各室別 職員數 및 所要面積(案)

구분	부 서 명	직원수(명)	면적(m ²)	구분	부 서 명	직원수(명)	면적(m ²)
중 앙 도 서 판	참 고 자 료 실	4	41	과 학 기 술 도 서 판	참 고 자 료 실	3	27
	서 지 조 사 실	4	36		정 기 간 행 물 실	6	58
	정 기 간 행 물 실	6	58		학 부 도 서 실	7	51
	학 위 논 문 실	2	19		지 정 도 서 실	3	22
	국 내 자 료 실 (학부도서실)	11	80		대 출 장 실	4	30
	지 정 도 서 실	3	22		관 장 실	1	30
	고 서 열 램 실	2	19		파 서 장	1	15
	녹 음 자 료 실	2	19		전 물 관 리	2	19
	시 청 각 실	2	32		계	5	
	마이크로자료실	2	19		계	32	250
	도 서 관 전 산 실	11	112		참고·정기간행물실	5	49
	대 출 실	5	45		대 출 실	3	22
	대 학 사 료 실	1	10		관 장 실	1	30
	관 장 실	1	42		파 장 실	1	15
	관 장 부 속 실	1	15		정 리 실	4	49
	서 무 과	14	90		전 물 관 리	2	15
	장 서 개 발 과	17	189		계	16	180
	정 리 과	26	307		총 계	162	1,585
	계	114	1,155				

파일 資料函 4個에 349m², 計 6,566m², 醫學圖書館은 圖書 11萬卷에 1,376m², 定期刊行物 1,050種에 95m², 計 1,471m²를 配定하여 全體所要面積을 圖書 160萬卷에 15,103m², 非圖書資料 169,840點과 地圖函 4個 및 베티칼파일 資料函 20個에 987m², 計 16,090m²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④ 利用者·職員·資料空間의 附帶空間

이는 上記한 利用者·職員·資料空間이외에 各部署의 業務遂行上 또는 會議, 休息 등을 위해 필요한 附帶空間을 의미하는 것으로, 各室別 所要面積(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21>과 같다.

〈表-20〉 各室別 資料數 및 所要面積(案)

설명	자료구분	중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의학도서관		계	
		자료수	면적 (m ²)	자료수	면적 (m ²)	자료수	면적 (m ²)	자료수	면적 (m ²)
참 고 자 료 실	도 서	20,000권	411	16,000권	332	3,000권	62	39,000권	805
	지도함	4개	15					4개	15
	VF자료함	6개	6	4개	4			10개	10
서 지 조 사 실	도 서	10,000권	212					10,000권	212
	최신호	3,260종	293	3,470종	305	1,050종	95	7,780종	693
*정기간행물실	제본분	82,800권	1,636	93,400권	1,844	34,800권	687	211,000권	4,167
*학 위 논문실	도 서	24,200권	384	8,700권	138	9,100권	143	42,000권	1,626
국내자료실	도 서	100,000권	956	70,000권	670			170,000권	1,626
*지정도서실	도 서	(14,000권)	92	(12,000권)	77			(26,000권)	169
고서열람실	도 서	20,000권	269					20,000권	269
녹음자료실	음반	10,000매	17					10,000매	17
	테프	5,000개	23					5,000개	23
시 청 각 실	슬라이드	10,000장	3					10,000장	3
	비디오데프	2,000개	15					2,000개	15
	트랜스페런시	1개	2					1개	2
마이크로자료실	캐비넷	(5,000장)						(5,000장)	
	필립	30,000릴	64					30,000릴	64
	파쇄	150,000장	14					150,000장	14
국외자료실(서고)	도 서	533,000권	3,420	492,000권	3,156	63,000권	484	1,088,000권	7,060
신문열람실	신문	40부	80	20부	40			60부	120
대학사료실	도 서	20,000권	130					20,000권	130
	VF자료함	10개	11					10개	11
계	도 서	81만권	7,510	68만권	6,217	11만권	1,376	160만권	15,103
	비도서	지도함 외	543	VF자료함 외	349	1,050종	95	지도함 외	987
총 계			8,053		6,566		1,471		16,090

* ()안의 지정도서는 국내자료와 중복되므로 면적만 가산함.

* 과학기술도서관의 학위논문은 정기간행물실에서 집중관리함.

* 의학도서관의 정기간행물, 학위논문은 참고자료실에서 집중관리함.

〈表-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附帶空間의 所要面積은 中央圖書館의 경우 1,021m², 科學技術圖書館은 229m², 醫學圖書館은 100m², 計 1,350 m²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表-21> 各室別 利用者·職員·資料空間의 附帶空間 所要面積(案)

구 분	실 명	부 대 공 간 부 분	면적 (m ²)
중앙도서관	서 지 조 사 실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및 색인용) 7 대	25
	정기간행물실	단말기 (이용자용) 3 대	12
	국내 자료실	대출대앞 이용자공간	21
		분실방지 장치공간	11
	지정도서실	대출대앞 이용자공간	21
	시 청 각 실	기타 여유공간	10
	복 사 실	복사기 6 대, 기사 1 명, 직원 6 명	64
	도서관전산실	항온항습실 1 실	60
		main computer 및 주변 기기실 1실	150
		자기테프 및 디스크 보관실	80
		창고 (물품보관)	20
	대 출 실	자료보관 공간	10
	신문열람실	휴식공간 10 석	20
	서 무 과	캐비넷보관공간	11
	장 서 개 발 과	자료보관공간 (3 천권 정도)	32
	정 리 과	자료보관공간	21
		목록함 (60 du) 24 개	42
	직 원 회 의 실	30 명 수용	60
	직원세미나실	140 명 수용	224
	직 원 휴 게 실	106 명 수용 (각 부서별로 분산배치 함)	127
	계		1,021
과학기술 도서관	정기간행물실	단말기 (이용자용) 3 대	12
	학부도서실	대출대앞 이용자공간	21
		분실방지 장치공간	11
	지정도서실	대출대앞 이용자공간	21
	복사실	5 대, 직원 4 명	45
	대출실	자료보관공간	10
	신문열람실	휴식공간 10석	20
	직원회의실	27 명 수용	54
	직원휴게실	29 명 수용	35
	계		229
의학도서관	참고·정기간행물실	마이크로 리더 2 대	8
		단말기 (이용자용) 3 대	12
	대출실	대출대앞 이용자공간	30
		목록함공간	10
		자료보관공간	10
	정리실	자료보관공간	11
		목록함 (30 du) 2 개	3
	직원휴게실	13 명 수용	16
	계		100
	총 계		1,350

⑤ 圖書館의 目的 以外의 使用空間

이는 로비, 복도, 계단, 브라우징룸, 화장실, 식당, 기계실, 승강기, 창고 등과 같은 共有面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所要面積(案)을 제시하여 보면 <表-22>와 같다..

<表-22> 圖書館目的 以外의 使用空間 所要面積(案)

	도서관 목적용 공간에 대한 비		면적 (m^2)
	도서관 목적용 공간 (m^2)	비율 (%)	
중 앙 도 서 관	16,959	25	4,241
과학기술도서관	12,414	25	3,106
의 학 도 서 관	2,872	15	428
계	32,245	15~25	7,775

<表-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共有面積은 中央圖書館의 경우 적어도 圖書館 目的用 空間의 25%인 $4,241m^2$, 科學技術圖書館은 25%인 $3,106m^2$, 醫學圖書館은 15%인 $428m^2$, 計 $7,775m^2$ 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기서 醫學圖書館의 경우 다른 圖書館과는 달리 15%만을 配定한 것은前述한 바와 같이 全體所要面積이 $3,300m^2$ 이므로 單獨建物보다는 複合建物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V. 結論

지금까지 圖書館의 三大要素인 資料·職員·施設을 中心으로 1988年부터 2002年까지 15年間에 걸친 慶北大學校圖書館 長期開發計劃案을 제시하여 보았다.

大學設置基準令 및 圖書館法施行令에 명시된 法的基準과 여러 學者들이 제시한 理論을 바탕으로 이 研究에서 定立하여 본 計劃案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藏書規模는 碩·博士課程 教授·學習支援 集書段階(藏書開發 5段階 中 2段階水準)을 유지할 수 있도록 學生 1人當 70~80卷 程度인 160餘萬卷을 收藏目標로 設定하고, 1次 5個年 동안은 75萬餘卷 到達目標로

年平均 13%, 2次 5個年 동안은 120餘萬卷 到達目標로 年平均 10%, 3次 5個年 동안은 160萬餘卷 도달목표로 年平均 6.5%를, 學術雜誌規模는 學生 1人當 0.3種인 6,000 餘種을 收藏目標로 設定하고, 1次 5個年 동안은 구입분 2,230餘種 到達目標로 年平均 17.5%, 2次 5個年 동안은 4,100餘種 到達目標로 年平均 13%, 3次 5個年 동안은 6,000餘種 到達目標로 年平均 8%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非圖書資料는 地圖 2,000枚, 그림자료 5,000장, 錄音資料 15,000點, 슬라이드 10,000枚, 비디오 테프 2,000個, 트랜스페런시 5,000장, 마이크로형태자료 130,000點, 新聞 20種 40部 程度를 基本蒐集目標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③ 上記水準의 藏書開發을 위한豫算規模는 2002年까지는 學校總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 除外)의 5~6%를, 그 以後부터는 4% 程度를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職員規模는 2002年까지는 司書職員 104名(正司書 64名, 準司書 40名), 非司書職員 55名, 計 159名을 目標로 設定하고, 1次 5個年 동안은 現員보다 32名(正司書 16名 準司書 13名, 非司書職員 3名)을, 2次 5個年 동안은 現員보다 68名(正司書 30名, 準司書 22名, 非司書職員 16名)을, 3次 5個年 동안은 現員보다 99名(正司書 44名, 準司書 31名, 非司書職員 28名)을 增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組織構造規模는 2002年까지 7~8課 設置를 目標로 設定하고, 1992年까지 4課, 1998年까지 5~6課, 2002年까지 7~8課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閱覽席數는 學生定員의 25%, 大學院生 및 教授要員 定員의 各 30%인 5,700席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⑦ 圖書館建物은 캠퍼스가 分離된 點, 거리상 利用이 不便한 點, 15年 동안의 成長規模 等을 감안하여 볼 때 中央圖書館 一元化보다는 二元化가 바람직하므로 現 中央圖書館外에 科學技術圖書館과 醫學圖書館을 우선순위로 新築 또는 擴張하되, 上記한 15年 計劃을 對備한 建物延面積은 中央圖書館 21,200m², 科學技術圖書館 15,520m², 醫學圖書館 3,300m², 計 40,020m²(1987年末 現在 總面積은 15,406m²임) 規模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思料된다.

(8) 圖書館建物의 空間構成要素別 所要面積은 다음과 같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利用者空間……讀書用室은 총 5,700席에 12,838m², 非讀書用室은 총 170석에 382m², 計 13,221m².

職員空間(兼補職者 包含)……총 162名에 1,585m²

資料空間……中央圖書館 8,053m², 科學技術圖書館 6,566m², 醫學圖書館 1,471m², 計 16,090m².

利用者·職員·資料空間의 附帶空間……中央圖書館 1,021m², 科學技術圖書館 229m², 醫學圖書館 100m², 計 1,350m².

圖書館의 目的 以外의 使用空間……中央圖書館의 圖書館目的用 空間의 25%인 4,241m², 科學技術圖書館의 25%인 3,106m², 醫學圖書館의 15%인 428m², 計 7,775m².